

수원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가단518793 판결 [계약금반환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경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지정민

피 고 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2. 4.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단지개발사업 및 단지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금형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화성시 C 일원에 'D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의해 조성될 산업단지 내 부지를 분양받기로 하면서, 2017. 6. 26. 원고와 피고는, ① 원고가 피고에게 신주인수를 조건으로 합계 13억 5,000만 원을 투자하되, 1차 계약금 1억 3,500만 원은 계약체결시에, 2차 계약금 2억 7,000만 원은 계약 후 60일 이내에, 3차 중도금 2억 7,000만 원은 사업승인 후 3개월 내 협의, 4차 잔금 6억 7,500만 원은 착공 후 분양계약에 따라 협의하여 각 지급하고, ② 피고가 추진하는 이 사건 사업의 예정용지를 원고와 피고가 협의한 금액으로 원고가 양수하고, 위 투자금으로 그 대금을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6. 26. 1차 계약금 1억 3,500만 원, 2017. 8. 25. 2차 계약금 2억 7,000만 원, 합계 4억 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2018. 초경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에서 부정적 의견을 밝히면서 협의가 완료되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사업 지정 및 실시계획 신청 취하를 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의해 지급한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9. 8.경 원고에게 2019. 12. 31.까지 이 사건 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돈을 반환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의해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2019. 12. 31.까지 반환하겠다는 통지를 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2019. 12. 31.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약정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계약금 합계 4억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반환하기로 약정한 다음날인 2020.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2. 4.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약정에 의한 계약금 반환을 인정하므로,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 주장에 대해서는 살피지 아니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은 'E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재추진 중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가 추진 중인 'E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무관하게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의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